

서울특별시 서울 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64
------	------

2020. 9. 8.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0. 9. 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의승 경제정책실장)

1. 제안이유

가. 서울 창업성장센터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 2020.12.31.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나. 창업지원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창업성장센터를 기 운영 중인 한국기술벤처재단과 민간위탁(신규) 계약을 체결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6호

○ 민간위탁 추진현황

- 최초위탁(1차) : 2012.9.28. ~ 2014.12.31.
(한국기술벤처재단,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 재계약(2차) : 2015.1.1. ~ 2017.12.31. (한국기술벤처재단)
- 재계약(3차) : 2018.1.1. ~ 2020.12.31. (한국기술벤처재단)
- 위·수탁 변경 협약 : 2019. 5.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 추가)

다.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

- 한국기술벤처재단은 신기술 창업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지원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 서울 창업성장센터(KIST 소재)의 첨단기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전문인력 및 연구장비 등 KIST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임

-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KIST박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상시 해결 가능하며(KIST 기술자문 컨설팅)
- 마이크로 나노팩센터, 특성분석 센터 등 첨단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스타트업 제품 개발 지원이 가능함

- 창업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노하우와 다양한 콘텐츠 및 조직, 인력 등을 구비하고 안정적인 보육사업 운영경험을 보유한 기관은 매우 희소함

라. 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창업성장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을 위한 설비 구매 및 시설 공사
- 입주기업 선발·지원·평가관리 업무
- 수요자 기반 기업 맞춤형(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집중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진출 지원 및 스케일업 프로그램(교육, 네트워킹, 경영진단, 컨설팅 등)

마. 민간위탁 개요

- 위 치 :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홍릉벤처 밸리 BI 內)
- 규 모 : 부지 1,166㎡, 건물규모 3,912㎡ (1개동, 지상3~5층)
- 시설개관 : 2012. 9월
- 기 능 : 공간제공, 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화 지원 등
- 보육규모 : 독립형 보육실 20실 (1,166㎡)

- 소요예산 : 958백만원 (2021년 기준)
- 위탁기간 : 2021.1.1. ~ 2022.12.31. (2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신규 수의협약 (한국기술벤처재단)
 - 서울창업성장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 유형을 변경하고자
(사무형 → 시설형) 신규로 민간위탁 추진

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Post BI¹⁾ 시설인 서울창업성장센터의 위탁기간 만료(2020.12.31.)와 위탁유형 변경(사무형→시설형)으로 기존 수탁기관과 신규 수의 협약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나. 서울창업성장센터 현황

- 서울시는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 기본계획(2011.12)²⁾’에 따라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에 ‘서울창업성장센터(이하 “성장센터”)’를 조성해 2012년 9월부터 한국기술벤처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서울 창업성장센터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치 : 성북구 화랑로 14길 5○ 규 모 : 부지 1,166㎡, 건물규모 3,912㎡ (1개동, 지상3~5층, 입주공간 20개)○ 사업내용 : IT, BT 분야 기술 사업화 등○ '20년 예산 : 1,375백만원○ 수탁기관 : 한국기술벤처재단○ 위탁기간 : 2018. 1. 1. ~ 2020.12.31.○ 운영인력 : 7명(센터장, 팀장, 선임 3, 연구원 2)
---	--

- 1) POST Business Incubator(성장초기) :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 3~7년 이내 기업.
BI(창업단계) : 창업 3년 이내로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은 있지만 사업성은 입증되지 않은 기업.
Pre BI(예비창업단계) :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만 있고 다른 제반 여건이 불비된 예비창업 또는 창업초기 기업.
- 2) 동북권 대학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으로 스타기업을 육성하고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북권 발전을 도모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임..

- 성장센터는 스타트업 창업 후 성장 단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초기 창업기업들이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³⁾’ 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기술창업 프로그램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 이외에 입주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입주 대상은 창업 7년 미만의 서울 소재 창업보육센터(59개) 졸업 기업이나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창업기업 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으로, 최대 2년간 입주가 가능함.
- 초기 창업기업들이 창업보육센터 졸업 이후 높은 임대료 부담과 고가의 연구장비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첨단 연구장비와 우수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KIST와의 민관협력은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도약기 기업의 체계적 육성에 효과적인 사업 수행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연구개발 단계에서 마이크로나노팩센터, 특성분석센터 등 KIST가 보유한 첨단 R&D 인프라 시설 이용과 첨단기술 양도 등이 확대⁴⁾ 되고 있으며, 입주기업 역량수요 맞춤형 사업화에 3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중임.
- 최근 3년간 성장센터 입주기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총매출 378억원,

3)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 초기 창업 벤처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했다라도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넘어야 할 어려움을 의미함.

4) KIST 보유 첨단기술 양도가 2019년 228개에서 2020년 379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임.

투자유치 133억원에 17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입주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전국 창업보육센터 평균매출액(2.9억원)의 2.5배가 넘는 7억 6천만원에 달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서울 창업성장센터 입주기업 성과>

(단위 : 억원,명,건,개社)

구 분	총매출	투자유치	신규고용	지식재산권	입주기업수
합 계	378억원	133억원	174명	155건	
2019년	132억원	67억원	52명	77건	20개社
2018년	90억원	51억원	87명	62건	20개社
2017년	156억원	15억원	35명	16건	10개社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 서울시는 첨단기술 분야 기업의 기술 사업화와 성장지원 노하우를 갖춘 ‘한국기술벤처재단’ 과의 계약기간이 2020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유형 변경을 포함해 신규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음.
- 창업 도약 단계에 있는 기업의 선정과 평가, 사업화 지원 등의 사무는 첨단산업 기술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창업분야의 단계별 보육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창업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음.
- KIST가 출자한 한국기술벤처재단은 신기술 창업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에 있어 KIST의 우수한 인적·물적 지원을 연계 활용할 수 있고, 입주기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한편, 2019년 5월 ‘성장센터’ 위탁운영 기간 중 입주기업의 임차료 부담을 해소⁵⁾하기 위해 서울시와 수탁기관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면서 위탁유형이 사무형에서 시설형으로 변경되었음.
- 이처럼 위탁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되고 신규 민간 위탁 추진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그러하지 않았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 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 ▶ 위탁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시설형↔사무형)

※ 민간위탁 유형

시설형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수반되는 사무 위탁

사무형 : 서울시의 사무를 수탁기관의 자기소유 또는 수탁기관 명의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여 행사하도록 위탁

수익창출형 :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법인·단체 등에서 운영

- 민간위탁은 복잡·다양한 행정사무를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간에 맡겨 행정의 고비용·비효율 구조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자칫 방만하게 장기 운영될 경우 공익성과 사명감,

5) 한국기술벤처재단은 입주기업에 임차료를 1㎡당 12,000원(서울시 17%, 입주기업 83%)을 부과해오다 입주기업의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해 무상 입주를 추진하였으나, 재단 이사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서울시가 75%를 지원하고, 재단에서 25%를 감액하는 것으로 임차료 무상지원을 위한 3차 업무협약을 체결함(2017.12.17.).

효율성이 퇴색될 수 있어 지방의회의 민주적 통제장치와 법·제도적 규율 장치가 적절히 작동되어야 함.

- 성장센터는 위탁유형의 변경으로 기존 위탁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사무 처리와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⁶⁾를 받아야 했으나, 내부 행정업무 처리의 절차와 기준으로 정한 규율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음.
- 이 밖에도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수의협약이 가능하더라도 공개모집이 원칙이라는 점, 성장센터 조성 당시와는 다르게 경쟁가능성이 있는 수탁가능 업체 등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공개경쟁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성장센터 조성 당시 동북권 대학의 혁신역량을 활용해 수도권 광역혁신네트워크 구축과 동북권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던 사업의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6) 최초 민간위탁 동의는 ‘서울특별시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으로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2012.7.9.).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 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764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 창업성장센터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 2020.12.31.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나. 창업지원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창업성장센터를 기 운영 중인 한국기술벤처재단과 민간위탁(신규) 계약을 체결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 창업성장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6호
 - 민간위탁 추진현황
 - 최초위탁(1차) : '12.9.28. ~ '14.12.31.
(한국기술벤처재단,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 재계약(2차) : '15.1.1. ~ '17.12.31. (한국기술벤처재단)
 - 재계약(3차) : '18.1.1. ~ '20.12.31. (한국기술벤처재단)
 - 위·수탁 변경 협약 : '19. 5.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 추가)

다.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

- 한국기술벤처재단은 신기술 창업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지원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 서울 창업성장센터(KIST 소재)의 첨단기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전문인력 및 연구장비 등 KIST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임
 -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KIST박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상시 해결 가능하며(KIST 기술자문 컨설팅)
 - 마이크로 나노팹센터, 특성분석 센터 등 첨단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스타트업 제품 개발 지원이 가능함
- 창업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노하우와 다양한 콘텐츠 및 조직, 인력 등을 구비하고 안정적인 보육사업 운영경험을 보유한 기관은 매우 희소함

라. 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 창업성장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 서울 창업성장센터 운영을 위한 설비 구매 및 시설 공사
- 입주기업 선발·지원·평가·관리 업무
- 수요자 기반 기업 맞춤형(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집중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진출 지원 및 스케일업 프로그램(교육, 네트워킹, 경영진단, 컨설팅 등)

마. 민간위탁 개요

- 위 치 :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홍릉벤처 밸리 BI 內)
- 규 모 : 부지 1,166㎡, 건물규모 3,912㎡ (1개동, 지상3~5층)
- 시설개관 : '12. 9월
- 기 능 : 공간제공, 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화 지원 등
- 보육규모 : 독립형 보육실 20실 (1,166㎡)
- 소요예산 : 958백만원 ('21년 기준)
- 위탁기간 : 2021.1.1. ~ 2022.12.31. (2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신규 수의협약 (한국기술벤처재단)
 - 서울 창업성장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 유형을 변경하고자 (사무형 → 시설형) 신규로 민간위탁 추진

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9조제2항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지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투자창업과 동북권창업팀 신봉근 (☎2133-4882)